기강감사

기강감사 결과 보고서

감 사 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근무 중 태도 점검·민원제보·비위 사실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개선사항 발굴·조치, 책임자 문책 등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근무 기강확립을 목적으로 함.

2. 감사 대상 및 범위

□ 감사 대상 : 사업운영처

□ 감사 범위 : 취업규칙 위반행위 등 복무 전반

3. 감사 기간 및 인원

□ 감사 기간 : 2026. 6. 10. ~ 2026. 10. 8.

□ 감사인 : 감사실 직무감찰팀 팀장 외 3人

(1) [경고] 사항

제　　목 : 취업규칙 등 위반

조치부서 : ★본사 ▼처

관 련 자 : AAA

내　　용

1.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직원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승인받은 휴가시간에 따라 근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련자 AAA는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조기 퇴근하여 회사 근태관리 및 복무질서를 저해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관련자 AAA에게 경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2) [감봉] 사항

제　　목 : 취업규칙 등 위반

조치부서 : ★본사 ▼처

관 련 자 : BAA

내　　용

1.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직원은 회사의 관계 법령, 정관, 그 밖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근무에 임하여 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회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직원 상호 간 인격을 존중하며 직장예절을 지켜 원활한 업무협조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련자 BAA는 동료 직원의 업무 개선 협조 요청에 폭언과 욕설로 대응하고, 신체 접촉 및 도구를 이용한 가해행위를 하는 등 직원 상호 간 인격 존중 및 직장예절을 위반하고 회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관련자 BAA에게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감봉)

(3) [감봉 2人, 견책 3人, 경고 2人] 사항

제　　목 : 취업규칙 등 위반

조치부서 : ★본사 ▼처

관 련 자 : CAA, DAA, EAA, FAA, GAA, HAA, IAA

내　　용

1.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직원은 신의와 성실로써 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 시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직원 상호 간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협조에 노력하여야 하며,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련자 CAA 등 6명(CAA, DAA, EAA, FAA, GAA, HAA)은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업무를 거부·지연하는 등 조직의 지휘·명령체계를 저해하였다. 또한, 모 직원의 복직 이후 지속적으로 접촉과 대화를 회피하고 무시하는 등 집단적으로 배척하였다.

아울러 관련자 CAA와 DAA는 회사 내 다른 직원의 비위행위를 문제 삼거나 회사의 운영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목적으로 직원들의 언행 및 작업 상황 등을 무단 촬영하였다.

관련자 EAA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소리를 지르는 등 반발하여 업무 질서를 저해하였다.

관련자 IAA는 청소 장비 운행 및 예초 작업 등 담당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홀히 하거나 거부하였다. 2025년 11월 지사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 없이 예초 작업을 거부하는 등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CAA, DAA에게 각각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감봉)**

▼처장은 EAA, FAA, IAA에게 각각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견책)**

▼처장은 GAA, HAA에게 각각 경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4) [견책] 사항

제　　목 : 취업규칙 등 위반

조치부서 : ★본사 ▼처

관 련 자 : JAA

내　　용

1.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직원은 신의와 성실로써 근무에 임하고 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회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자기 직무에 대한 충분한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지식과 교양 습득에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직원 상호 간 인격을 존중하며, 직장 예절과 우애를 지켜 업무협조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련자 JAA는 야간 근무 시 정해진 순찰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순찰 시간을 앞당겨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과거 동일한 사항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상급자로부터 순찰시간 준수 및 개선에 관한 지시를 세 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행위를 지속하여 정상적인 보안관리 업무 수행을 저해하였다.

또한, 회사에서 시행하는 경비 직무역량 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아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아울러 동료 직원에게 연장자라는 점을 내세워 직원 상호 간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 직장 예절을 준수하여야 하는 근무자세에 부합하지 않은 언행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관련자 JAA에게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견책)**

(5) [정직, 주의 2人] 사항

제　　목 : 취업규칙 등 위반

조치부서 : ★본사 ▼처

관 련 자 : KAA, LAA, MAA

내　　용

1.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직원은 상호 간 인격을 존중하고 직장예절을 준수하여 원활한 업무협조 및 건전한 직장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련자 KAA는 동료 간 언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먼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최초 신체 접촉 이후에도 추가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옷장에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등 신체적 위해를 가하였다.

관련자 LAA는 KAA와 다툼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갈등 상황을 확대시키는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관련자 MAA는 감사 내용 및 관련자 진술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가중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피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관련자 KAA에게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정직)**

▼처장은 관련자 LAA, MAA에게 각각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6) [경고 4人] 사항

제　　목 : 취업규칙 등 위반

조치부서 : ★본사 ▼처

관 련 자 : NAA, OAA, PAA, QAA

내　　용

1.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직원은 야간 근무시간 동안 회사가 정한 근무 장소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련자 OAA 등 4명(OAA, PAA, QAA, RAA)는 감사실 주관 야간 불시점검 당시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경계 감시 등 보안 업무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보고 등 상시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근무시간 중 취침함으로써 필요한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OAA, PAA, QAA, RAA에게 각각 경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경고)